

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4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년 4월 일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인감(발급)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의 증가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보상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수행토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함.

2. 주요골자

읍면 및 출장소 인감관련업무 직원의 인감사고 피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700,000원(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)
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바. 조례·규칙심의회 : 제5회 평창군조례·규칙심의회(2003. 4. 9) 원안의결

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)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□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

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